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6.(금) 11:00 < 9.7.(토) 조간 > 배포 2024. 9. 6.(금)

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동남권에 개소

- 7개 금융기관과 지역기업 금융협력 가동 -

-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및 조선기자재 기업현장 방문

<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7.17(수)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에 따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대한상의(서울)에 설치하여, 기업 상담·컨설팅·애로해소 및 이행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밀착 지원하기 위해, '24년 7월 「기업활력법(제36조의2)*」을 개정·시행하여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되었다.

* 제36조의2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는 지역경제 규모, 사업재편 수요 및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남권(전체 484개 승인기업 중 동남권이 98개 기업)에서 문을 열었다. 앞으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 등과 함께 동남권 지역 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산업부 박성택 제1차관,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현장지원센터의 빠른 안착과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 >

개소식에 앞서 지역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에 필요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금감원, 5개 은행(iM뱅크, 부산, 전북, 경남, 광주),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 금융협력 참여기관이 기존 5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에서 12개 은행·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었으며, 특히, 권역별 거점은행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 : 1차 ('22.10월), 2차 ('24.6월), 3차 ('24.9.6)

박성택 1차관은 "인공지능(AI) 발(發) 대전환,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은 개별 기업경영 개선을 넘어 지역산업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권,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기자재 기업 현장방문 >

개소식 후, 박차관은 부산 소재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인 선보공업*을 방문하여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기자재 역량이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기자재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말까지 조선산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LNG 연료 공급 시스템 등 친환경 분야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 업체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태형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박석용 (044-203-4232)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이영종 (044-203-43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기업활력법」 : 지원체계, 적용기한, 지원대상, 특례 범위 대폭 보강

○ **(지원체계) 기업 중심 현장지원체계 구축**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신설 → 사업재편 수요 발굴·연계,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 원스톱 밀착 제공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시, 동반성장 평가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기한)** 한시법(당초 '24.8월 일몰) → **상시법 전환**(일몰 폐지)

○ **(유형)** 3개 유형 → **6개 유형**

*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신설) 기존 + 3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 **(특례)** 모든 사업재편에 확대 적용 (기존 과잉공급·산업위기지역에만 적용)

* (상법)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시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 30%) 등 유예기간 연장 (최대 5년)

□ 「기업활력법 시행령」 : 기업활력법 개정사항 구체화 등

○ 공급망 안정 범위 등 법 위임사항 구체화

- 공급망 3법 등과 연계하여, 품목·행위 유형별 규정

구 분	주요 내용
품 목	△공급망 안정품목·핵심전략기술 적용품목(소부장특별법), △핵심자원(자원안보법), △경제안보 품목(공급망기본법), △긴급수급안정화 품목(첨단전략산업법)
행 위	국내생산(설비 신·증설, 유턴 등), 유통, 비축, 수입처 다원화, 대체품목 개발

- 지원센터·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 사업재편 제도 운영개선

- 사업재편 구조변경 요건에 **'시설·장비의 감축·폐쇄' 추가**
- 심의위원회에 **산업·금융 실무전문가 및 청년인재 참여 확대**
-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판정절차 면제**

참고 2 사업재편 제도 주요 성과

◇ 총 **484개사**를 승인하여, **신규고용 2.5만명·투자 38조원** 진행 중

▪ **(규모) 중소기업**(81%) 뿐 아니라, **대·중견기업**(19%)도 적극 활용

* 중소기업 394개사 (81%), 중견기업 79개사 (17%), 대기업 11개사 (2%)

▪ **(유형) 과잉공급 해소** 위주에서 **신산업 진출** 위주로 변화

* 과잉공급 113개사 (23%), 신산업 367개사 (76%), 탄소중립 1개사 (0.2%), 산업위기지역 3개사 (1%)

▪ **(시기)** 최근 5년간 **사업재편 활용이 빠르게 증가**

연 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6
기업수	15	51	34	9	57	108	106	93	11

▪ **(지역)** 非수도권 기업의 **사업재편 참여**가 활발 (275개社/484개社)

소 재	수도권	전남권	전북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강원권
기업수	209	24	16	98	76	57	4

▪ **(업종)** 자동차부품·조선·기계 업종이 **52%** (251개社/484개社)

업 종	車부품	기계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소프트웨어	철강	의료기기
기업수	154	53	44	35	25	30	13	13

* 서비스 19, 반도체 12, 디스플레이 12, 유통·물류 9, 비철금속 9, 섬유 8, 통신방송장비 7 등

